

부천시 공고 제2026-1870호

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· 공고

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-1번지 소재 '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'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부 천 시 장

1. 공람기간 : 공람·공고일부터 14일간(2026. 7. 15. ~ 2026. 7. 29.)
2. 공람장소 : 부천시청 원도심재생과(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, 10층),
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(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0-2, 2층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
 - (1) 사 업 명 칭 :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(조합장 장기현)
 - (2)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-1번지 일대
 - (3) 구 역 면 적 : 3,293.5㎡
 - (4) 조 합 원 수 : 55명
 - (5) 사업시행자 :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 - (6) 변 경 내 용 : **조합정관 변경**
6.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은 인가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본 공고 내용은 토지 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,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

소관부서	원도심재생과	전화번호	032-625-3815
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